#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 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노616]

# 【전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이명신(기소), 구승모, 정재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원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 【주문】

]

-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공소외 25 영농조합법인으로 인한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2008. 10. 14.자 및 2012. 11. 29.자 각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 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 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II.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 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 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 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 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 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 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 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 1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 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 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원심은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진단서'라고 한다) 및 2011.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진단서'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3~9, 23~78쪽).
- 나)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표.1항 및 2항(이른바 '기타 사실')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6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등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제2, 3 진단서의 각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부담, 도주가능성까지 고려한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일 뿐이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이나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처벌되는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한편, 제2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1이, 제3진단서는 전공의 공소외 27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검토 및 수정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2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2는 제2, 3 진단서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진단 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독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라) 따라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